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매년 4월 28일을 “산업재해근로자의 날”로 지정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9조의2 신설).

II. 검토의견

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이 화 실)